

충청북도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8.12. 3.

제안자 : 이기동 의원 외 6인

수정이유

- 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, 제5조제2항, 제7조제2항 중 “부협의회장”을 각각 “부회장”으로 하고
-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중 당연직 위원과 중복되는 “도의원”을 삭제하고자 함

수정주요내용

- 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, 제5조제2항, 제7조제2항 중 “부 협의회장”을 각각 “부회장”으로 하고
- 안 제3조제2항제2호 가목의 위촉직 위원 중 “도의원”을 삭제 한다

충청북도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.

- 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, 제5조제2항, 제7조제2항 중 “부협의회장”을 각각 “부회장”으로 하고
- 안 제3조제2항제2호 가목의 위촉직 위원 중 “도의원”을 삭제한다

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<u>부협의회장</u> 2명을 포함한 10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3조(구성) ① _____ <u>부회장</u> _____ _____.
② (생략)	② (원안과 같음)
1. (생략)	1. (원안과 같음)
2. (생략)	2. (원안과 같음)
가. 기업인, 학계, 민간단체, 도의원 등 환경운동에 관심이 있는자	가. 기업인, 학계, 민간단체 등 _____
③ 협의회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<u>부협의회장</u> 은 협의회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.	③ _____ <u>부회장</u> ----- -----.
제5조(직무) ① (생략)	제5조(직무) ① (원안과 같음)
② 협의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장이 지명한 <u>부협의회장</u> 이 직무를 수행한다.	② _____ ----- <u>부회장</u> -----.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(생략)	제7조(운영위원회) ① (원안과 같음)
② 운영위원회는 협의회장, <u>부협의회장</u> 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며,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장 이 된다.	② _____ <u>부회장</u> _____ _____ -----.
③ (생략)	③ (원안과 같음)
④ (생략)	④ (원안과 같음)